auri brief.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55
2017. 7. 30

국공립어린이집 계획기준의 실태와 개선 방향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요약

- 무상보육 및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은 미흡
- 양적 확충과 더불어 보육목표에 부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간환경 개선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행 국공립어린이집의 계획기준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법적 계획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유일하며, 지자체별로는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안전성, 쾌적성 측면의 특정 시설물 설치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인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쾌적성, 활동성, 지속가능성 측면의 세부 설계지침 마련이 필요
-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행 법제도를 보완하는 설계지침(가칭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신설하는 방안 제안

주제어 | 국공립어린이집, 계획기준, 이용자 인식

1 국공립어린이집 계획기준 실태조사의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수요 증가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기관이자 공공건축물로서 중요성 인식
  - 어린이집은 0~5세 영유아가 부모와 가정을 벗어나 최초로 접하게 되는 시설로, 영유아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어린이집의 공간환경 설계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중요성 인식
  - 노유자시설에 속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건축물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표적인 공공건축물로서의 공간환경 품질 향상이 요구됨(2015년 세움터 자료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은 전국적으로 6번째로 많은 공공건축물)

- 무상보육 및 보육료 지원 확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급증
  - 2013년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3~5세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
  - 특히 보육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더욱 집중되고 있는 실정(서울연구원(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는 90%에 육박)

■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중심의 정책으로 물리적 공간환경의 질에 대한 고려 미흡

-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투입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정부예산 추이(2006년~2016년)

※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Ⅳ)」, p.169;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Ⅳ)」, pp.173~174;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Ⅳ)」, pp.171~17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Ⅳ)」, p.22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Ⅳ)」, pp.215~216;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Ⅳ)」, pp.224~225;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Ⅳ)」, pp.233~23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Ⅳ)」, pp.243~244;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Ⅳ)」, pp.151~208;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복지부」, pp.1~63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

- 이에 반해 국공립어린이집 공간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규정된 영유아 1명당 시설면적 4.29㎡ 이상 확보 기준은 2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적용
  - 사회적 ·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여도 영유아를 위한 공간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 보육 목표 달성 및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공간환경에 대한 개선방향 설정을 위해 현황진단이 선행될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계획 및 설계 시 적용되는 법적 계획기준, 지자체별 설계지침 등 현행 계획기준 현황을 검토하여 제도적 문제 진단
- 현행 기준이나 지침에 대한 보육교사, 학부모 등 이용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개선사항 발굴 필요

2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조사 개요 및 방법

- 실태조사는 현행 제도적 기준 조사와 이용자 인식 조사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
  - 현행 제도적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제도 상의 계획기준을 검토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발주 시 제시되는 설계지침의 내용 분석
  -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계획기준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공간적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심층면담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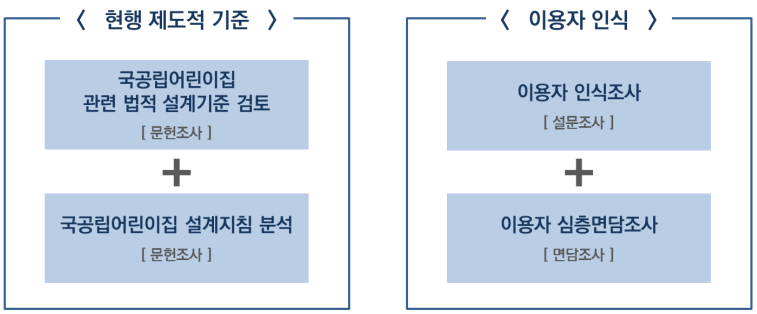

실태조사 개요

조사방법 및 대상

구분		조사방법	조사대상
제도적 기준 조사	법적 계획기준	관련 법제도상의 계획기준 파악(문헌조사)	–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 · 지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
	설계지침	국공립어린이집 발주 시 제시되는 과업지시서상의 설계지침 분석 (문헌조사)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고된 최근 5년간의 국공립어린이집 과업지시서 60건
이용자 인식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온라인 및 개별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이용자 140명(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 101명,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39명)
	이용자 심층면담조사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	7곳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 조사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계획기준 조사 시 '보육과정의 목표 실현' 및 '공공건축물로서의 품질 확보'의 관점에서 ①안전성, ②쾌적성 · 편의성, ③활동성 · 창의성, ④지속가능성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 파악

조사항목 결정 프로세스

구분		주요 내용	조사항목				
			안전성	쾌적성 · 편의성	활동성 · 창의성	지속 가능성	기타
보육 목표	보육 과정의 목표	영유아의 안전성	●				
		신체활동의 다양성			●		
		사회성			●		
		언어생활의 적절성			●		
		자연탐구 능력			●		
		감성 및 창의성			●		
공공 건축의 가치	서수정 외 (2007)	생활 공공성 기반의 이용자 중시		●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기능 강화					●
		지역주민의 공적 삶의 가치 증진					●
	김상호 외 (2009)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집적					●
		도시 맥락과의 조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					●
		합리적 사용성 추구		●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에너지 효율성				●	
		편의성과 지속가능성		●		●	
		안전성과 쾌적성	●	●			
		지역 커뮤니티와의 조화					●
		건축문화적 가치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www.law.go.kr.(검색일자: 2016.06.01); 서수정 외(2007); 김상호 외(2009);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브로슈어 참조

- 이용자 인식조사는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발주 시 적용되는 설계지침의 중요도와 필요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심층면담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공간환경 개선사항 발굴
  -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은 ①안전성, 쾌적성 · 편의성, 활동성 · 창의성,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관점별 상대적 중요도, ②계획요소별 절대적 중요도, ③세부 지침별 필요성 정도
  - 심층면담에서는 네 가지 관점별로 국공립어린이집 공간환경의 개선사항 발굴

3 실태조사 결과

■ 현행 법적 계획기준 검토 결과

- 안전성 확보 관련 계획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서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입지나 배치, 공간계획, 구조 및 설비기준, 안전장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실별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이 다수
  - 그 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영유아보육법」과 동일한 입지 기준은 제시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해 마련된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3차)'에는 영유아 관찰이 용이한 공간 구성 등에 대한 계획기준을 제시

- 쾌적성 및 편의성 확보 관련 계획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서 쾌적성 확보를 위해 시설 규모, 공간계획, 설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육실 등 시설 규모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주를 이룸
  - 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서는 휴식 및 소통 공간 마련, 영유아를 위한 시설 배치 등 공간계획과 더불어 인테리어나 교재, 교구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

- 활동성 및 창의성 확보 관련 계획기준
  -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서는 영유아들의 활동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부 공간계획, 옥외 놀이터 및 놀이기구, 교재 교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
  - 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서는 옥외놀이터에 대근육활동을 위한 1종 이상의 놀이기구 설치 및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교재 · 교구 마련에 대한 기준뿐임

- 지속가능성 확보 관련 계획기준
  -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법제도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나 시설 내구성 등 지속가능성 측면의 계획기준은 부재

법적 계획기준의 주요 내용

구분		관련 법제도	계획기준 내용 요약
안전성 확보 관련 계획기준	입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나.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격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가.–3)–마)–③–(i) 놀이터 주변 각종 위험물 제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으로부터의 보호) ①공동주택,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위험물로부터 50m 이격하여 배치
	공간 계획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가.–3)–마)놀이터–③–(ii)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 설치 – 가.–3)–사)비상재해대비시설–②–(i),(iii) 비상출입구 설치 및 규격 – 가.–3)–자)그 밖의 실내설비–⑥ 영유아 안전을 위한 설비 위치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	1–1–5. 전체 영유아 관찰이 가능하도록 보육실 공간 구성
	설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가.–3)–마)–③–(v)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안전 장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가.–3)–다)–② 목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 가.–3)–다)–③ 온수 조절장치 설치 – 가.–3)–라)–①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 가.–3)–마)–③–(ii), (iii) 영유아 손잡이 레일 설치 – 가.–3)–사)–① 비상구 유도등 및 잠금장치 설치 – 가.–3)–사)–②–(ii) 피난시설, 장비 구비 – 가.–3)–자)–② 출입문, 창문 등에 손끼임 방지나 완충장치 설치 – 가.–3)–자)–③, ④ 온열기, 모서리에 보호장치 설치
쾌적성 · 편의성 확보 관련 계획기준	규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	2. 어린이집의 규모 – 국공립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300명 이하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가.–3)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 확보 – 가.–3)–가)–③ 보육실은 영유아 1명당 2.64㎡ 이상 확보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	1–4–1. 총 정원 준수 1–4–2. 영유아 법정 비율 준수 1–4–3. 혼합반 구성 원칙 준수 1–4–4. 연령별 반 규모 적절 1–4–5. 보육실 면적(영유아 1인당 2.64㎡) 준수
	공간 계획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가.–2_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 – 가.–3)–가)–② 주 출입구는 지표면 1m 이내 층에 설치 – 가.–3)–다)–④ 목욕실과 보육실은 인접 배치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	1–1–3. 보육실 내 영유아 휴식공간 마련 1–1–6. 영유아를 위한 자료가 적절하게 배치 1–2–1. 현관은 영유아와 부모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계획 1–2–2. 부모와 보육교사의 소통 공간 마련 1–7–5. 놀잇감과 활동자료가 영유가가 수원하게 이용하도록 배치 1–8–4. 보육교사의 휴식공간 마련 1–8–5. 교사실 별도 마련

구분		관련 법제도	계획기준 내용 요약
활동성 · 창의성 확보 관련 계획기준	공간 계획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	1-2-4. 영유아가 활동할 수 있는 유희실 마련
	놀이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가.-3)-마)-①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1명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 – 가.-3)-마)-②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이구 1종 이상 설치
	교재, 교구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	1-6-1. 대근육 발달을 위한 신체활동 자료를 다양하게 배치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검색일자: 2016.06.01); 보건복지부 · (재)한국보육진흥원(2016), 「2016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3차 지표 시범사업용」, pp.97~141.

■ 시설별 과업지시서상의 설계지침 분석 결과

-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관련 설계지침이 주를 이루며 영유아의 활동성 및 창의성 증진,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된 지침은 극히 일부(시설 면적에 대한 지침은 법적 계획기준과 동일)

- 공간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기준들을 설계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공간계획적 측면보다는 특정 안전장치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지침 비중이 높은 편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성 확보 관련 지침 및 빈도수

구분		설계지침	빈도수
안전성 확보 관련	건축물 배치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배치	7
		차량의 출입은 별도의 동선으로 계획하여 안전성 확보	10
	보육공간	목욕실 및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 설치	**30**
		목욕실 및 화장실에 온수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조정 및 고정 설비	12
	이동공간	복도와 교실문에는 강화유리 및 손 보호대 설치하고, 아동과 성인 눈높이에 유리를 사용하여 투시형으로 계획	17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함	8
	외부공간	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후 안전검사	13
		어린이집 내 옥상 놀이터에는 난간 높이 1.2m 이상 확보	6
	마감재료 및 인테리어	바닥 및 모서리, 가구 등에 대해서는 자재 재질 선택에 신중, 라운딩 처리	**23**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안전한 마감 재료와 공법 사용(친환경 마감재료 사용)	**27**
		외부마감재 중 드라이비트 사용 불가	9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 사용	10
	설비 및 피난 시설	각 층별 비상재해시설(미끄럼대) 별도 설치	**23**
		커튼, 벽지 등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춘 것 사용	6

구분		설계지침	빈도수
쾌적성 및 편의성 확보 관련	건축물 배치	안전과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함을 느끼도록 계획	10
	건축물 입면	입면은 밝고 활동적이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색채 적용	6
	보육공간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으로 계획	16
		아동이 가정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12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22**
		세면기 및 소변기는 유아용으로 설치	**24**
	보육 지원공간	지하 1층 피트공간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교재 · 교구실 설치	7
	이동공간	유아본위의 안치수 및 비탈치수 등 고려(경사도 30도 이하)	7
		창문높이, 계단손스침, 문손잡이 등 어린이의 인체치수를 고려하여 계획	15
		교실 출입문은 문턱이 없도록 계획	13
		시설 사용에 있어서 어린이와 장애아동의 차이를 느낄 수 없도록 무장애공간으로 계획	**27**
		음식물 전용 승강기(덤웨이터) 계획	8
	설비 및 피난시설	보육실, 복도, 계단 등에 바닥난방 사용	**30**
		일조와 통풍, 환기가 잘 되도록 계획	11
		실내 온도와 습도,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공기순환기 등)	6
		조리실에는 청정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한 채광 및 환기시설 적용	12
		조명기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6
		실외 및 옥상에 수도공급이 가능하도록 수전 설치	8
활동성 및 창의성 확보 관련	보육공간	교실에 인터넷과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설치	6
	외부공간	영유아 1인당 3.5㎡의 놀이터 설치(0세반 제외)	7
		모래밭, 대근육활동시설 등 실외 놀이시설 3개 종류 이상 설치	9
지속가능성 확보 관련	공간계획	장래 인원구성의 변화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변화에 대응 가능한 가변성과 안전, 편의성을 고려한 적정규모 이상의 공간을 계획하고 효율적 기능적 배치 고려(증축 등을 감안)	6
		각 실의 연계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고 운영자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	8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자연 채광과 환기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	6
		미래 확장에 대비하여 칸막이는 가변형으로 설치하거나 공간의 확장성, 융통성 고려	**14**
	재료	사후관리가 손쉬운 자재 이용 권장	8

※ 주 : 본 표에서 다루는 설계지침의 내용은 6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과업지시서 중에서 특정 어린이집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지침은 제외하고 10%에 해당되는 6개 이상 과업지시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

■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 관점별 상대적 중요도
  - 학부모와 보육교사 모두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보육교사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쾌적성, 활동성, 지속가능성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

- 계획요소별 절대적 중요도
  - 8개 주요 계획요소 중에서 학부모는 '설비 및 피난시설 계획', '마감재료 및 인테리어', '보육공간'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

–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의 주생활공간인 '보육공간'이 가장 중요하며, 그 외에 '설비 및 피난시설 계획', '마감재료 및 인테리어' 순으로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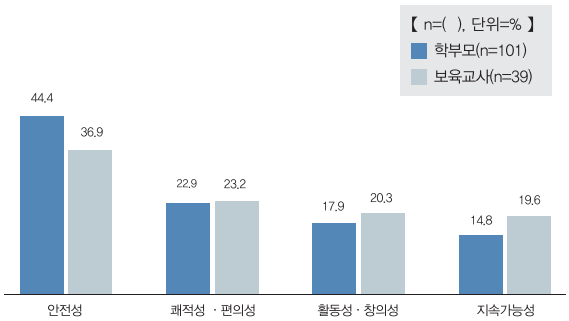

관점별 상대적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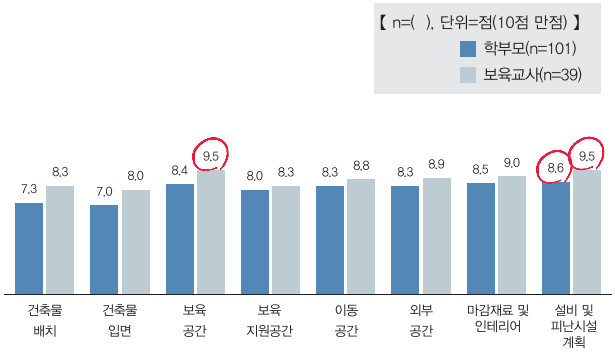

계획요소별 절대적 중요도

- 세부 지침별 필요성 정도

– 어린이집의 안전성, 쾌적성 및 편의성,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지침은 모든 항목에서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공통적으로 필요도 4점(5점 만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

– 활동성 · 창의성 측면에서 대한 설계지침은 외부공간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인터넷이나 TV 시청 등 기타 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인식하지 않음

안전성 측면의 세부 설계지침별 필요성 정도(단위: 점, 5점 기준)

안전성 측면의 설계지침		필요성 정도	
		학부모	보육교사
배치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배치	4.30	4.85
	차량의 출입은 별도의 동선으로 계획하여 안전성 확보	**4.57**	4.92
보육 공간	목욕실 및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 설치	4.54	4.90
	목욕실 및 화장실에 온수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조정 및 고정 설비	4.49	4.92
이동 공간	복도와 교실문에는 강화유리 및 손 보호대 설치	4.51	4.92
	복도와 교실문 등은 아동과 성인 눈높이에 유리를 사용하여 투시형으로 계획	4.30	4.49
외부 공간	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후 안전검사	4.54	**4.95**
	어린이집 내 옥상 놀이터에는 난간 높이 1.2m 이상 확보	**4.60**	**4.97**
마감재료 및 인테리어	바닥 및 모서리, 가구 등에 대해서는 자재 재질 선택에 신중, 라운딩 처리	4.49	**4.95**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안전한 마감 재료와 공법 사용(친환경마감재료 사용)	**4.55**	4.90

※ 주 : 본 표에서 다루는 설계지침의 내용은 6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과업지시서 중에서 특정 어린이집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지침은 제외하고 10%에 해당되는 6개 이상 과업지시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

■ 이용자 심층면담조사 결과

- 안전성 측면의 개선 요구사항
  - (건축물 배치) 어린이집 외부공간은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후면에 배치하고, 외부인 및 영유아의 출입 관리를 위해 사무실은 1층 현관 앞에 배치하도록 할 필요
  - (보육공간) 보육실 및 복도 등에 영유아가 충돌 시 다치지 않도록 하는 보호대, 여닫이문에 손 끼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창문 아래 등 위험지역에 보호패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필요
  - (이동공간) 보육교사들은 출입구에서 영아는 주차장에서 바로 진입하고, 유아는 현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출입구 부분이 차도에 면할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울타리 등을 설치할 필요
  - (외부공간) 놀이터 등 외부놀이공간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바닥재료를 선택 필요

도로변 울타리 설치

놀이공간에 안전한 바닥재료 사용

- 쾌적성 및 편의성 측면의 개선 요구사항
  - (보육공간) 보육공간에 충분한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영유아 보육의 편의를 위해 보육실과 직접 연결되도록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
  - (보육지원공간) 교재교구실 관련 면적 기준을 증가하거나 수납공간을 마련할 필요
  - (외부공간) 외부공간이 영유아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외부공간 조성에 관한 설계지침이 별도로 필요

- 활동성 및 창의성 측면의 개선 요구사항
  - (보육공간) 영유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고, 내부에서 외부 자연환경의 변화를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하며, 영유아의 신체사이즈 및 정서를 고려하여 다양한 소규모 놀이공간을 마련할 필요

- 지속가능성 측면의 개선 요구사항
  - (보육공간) 보육공간을 필요시에 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빙월(moving wall) 등의 설치로 가변적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환경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가구 등에 대한 설계지침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

- 기타 개선 요구사항
  - 보육교사들의 의견이 설계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 참여시스템 마련 필요

4 국공립어린이집 계획기준 개선 방향

■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계획기준의 한계점

- **(법제도적 측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제시하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유일한 계획기준이나, 내용적으로 특정 시설 설치에 편중
  - 국공립어린이집 조성 시에 적용되는 법적 계획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해 도입된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가 대부분을 차지
  - 이 중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는 설계 단계가 아닌 이용 단계에 유지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계획기준은 「영유아보육법」상 기준이 유일
  -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상 계획기준에서는 안전성, 쾌적성 · 편의성 측면에 대한 기준 중심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보육목표 달성 및 보육환경 개선에 한계

- **(설계지침의 측면)** 시설별 설계지침 역시 안전성, 쾌적성 관점에서 특정 시설물 설치 중심의 지침이 대부분이며, 일부 불합리한 지침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발주되는 국공립어린이집별로 대부분 설계지침이 제시되고 있으며, 시설별 설계지침 내용이 상이
  -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계지침에서 법적 계획기준에서 제시하지 않는 안전성, 쾌적성 및 편의성 관련 세부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나 안전장치 설치 관련 내용이 다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소방 설치, 편백나무 사용 등 특정시설 설치나 재료 사용에 대한 지나친 기준을 제시

■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계획기준 개선 사항

•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 요구

– 학부모와 보육교사 모두 안전성을 중시하며,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보육공간의 쾌적성, 활동성, 지속가능성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 또한 계획요소별로는 보육공간과 설비 및 피난시설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인식

– 현행 지자체 설계지침 상의 안전성, 쾌적성 및 편의성 등과 관련된 지침들의 필요성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침 내용이 미미한 활동성 · 창의성 측면의 현행 지침은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

• 심층면담 결과 보육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안전성, 쾌적성 및 편의성, 활동성 및 창의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설계지침을 개선할 필요

– 안전성 측면에서 건축물 배치나 동선에 대한 계획기준이 추가로 필요

– 현행 설계지침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부 활동성 및 창의성 관련 지침들은 크게 필요치 않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지침 마련 요구

– 활동성 및 창의성 측면에서 중요한 공간인 외부공간 설계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요구

■ 국공립어린이집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법적 계획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설계지침이 필요하며, 보육공간의 안전성뿐 아니라 활동성, 창의성 등 보육목표에 부합한 설계지침 마련

–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설계지침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통 설계지침 마련

– 현행 법제도 상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설계지침(가칭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 신설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044-417-9602, shkim@auri.re.kr)
여혜진 부연구위원 (044-417-9840, hjyeo@auri.re.kr)
이여경 부연구위원 (044-417-9655, yklee@auri.re.kr)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김대익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7 www.auri.re.kr

designed by_ HANA 02-2273-7294